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범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년 1월 11일

○ 회부일자 : 2021년 1월 12일

3. 제안이유

○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및 삭제, 사무명 변경, 근거법령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신 설 : 13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권한 이양으로 신설 12건>

- (경제기업과) 가격 등의 표시에 관한 사무(5건)

- ① 소매가격표시 점포지정권, ② 가격표시 의무자에 관한 관계자료 제출명령권,
- ③ 가격표시 의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권한,
- ④ 가격표시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과 징수, ⑤ 가격표시 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결과통보

- (에너지과) 발전설비(송배전부문제외) 1,000kW이하 규모 사무(7건)

- ①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② 전기사업의 준비기간의 지정, 연장 및 사업의 개시신고의 접수, ③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④ 전기사업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 구역의 감소, 과징금 부과 징수 등, ⑤ 전기사업 허가 취소 청문, ⑥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⑦ 공사 신고의 접수

<근거법령개정에 따른 신설 1건>

- (에너지과) 발전설비(송배전부문제외) 1,000kW이하 규모 사무(1건)

기술기준의 적합명령

○ 삭 제 : 20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권한 이양으로 삭제 : 19건>

- (에너지과) 승강기 관한 사무(2건)

- ①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②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 (문화예술산업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사무(8건)

- ① 신고수리 및 신고증 교부, ② 변경신고 수리 및 신고증 갱신교부, ③ 폐업 신고 수리 및 직권말소, ④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처분, 영업정지명령 시정 조치 및 경고조치, ⑤ 영업소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 ⑥ 청문, ⑦ 수수료, ⑧ 과태료의 부과 징수

- (교통정책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사무(9건)

- ① 공사시행의 인가 등, ② 공사시행의 완성, ③ 사용개시, ④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위반 시정명령, ⑤ 터미널의 관리, ⑥ 사업개선 명령, ⑦ 공사시행 인가, 시설확인 시 관계 행정기관장 간의 협의 및 통보, ⑧ 면허의 취소, ⑨ 과징금 처분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삭제 1건>

- (에너지과) 승강기 관한 사무(1건)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관한 운행정지 명령

○ 그 밖의 개정사항 : 5건

<위임사무명 변경 : 1건>

- (교통정책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사무(1건)
위치·규모·구조 설비의 변경 → 위치의 변경

<근거 법조항 개정 : 4건>

- (에너지과)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사무(3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개정 ① 제32조 → 제40조
② 제33조 → 제41조
③ 제42조 → 제51조
- (에너지과)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1건)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1조 → 제75조

5.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라 국가사무에서 시도로 위임된 사무의 신설과 시군구 이양으로 삭제 등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근거 법조항 개정으로 사무명 변경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권한이양으로 경제기업과의 가격 등의 표시에 관한 사무 5건, 에너지과의 발전설비 1,000kw이하 규모 사무 7건과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에너지과의 발전설비 1,000kw이하 규모 사무 1건 등 13건이 신설되고,

둘째,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시군구에 권한이양으로 에너지과의 승강기에 관한 사무 2건, 문화예술산업과의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사무 8건, 교통정책과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사무 9건과 근거법령에 따른 에너지과의 승강기 관한 사무1건 등 20건을 삭제하고,

셋째,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교통정책과의 위임사무명 변경(위치·규모·구조 설비의 변경→위치의 변경) 1건과 근거 법조항 개정 관련 에너지과의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사무’ 3건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 1건을 개정하고자하는 것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위임된 사무의 신설 및 삭제, 근거 법조항 개정, 위임사무명 변경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